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51228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10. 20 선고 2021나204981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20가합51228 판결

전문

원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호사 김규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양원석

피고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케이앤엘 태산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경렬, 김진호

변론 종결 2021. 8. 18.

판결 선고 2021. 11. 2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 주위적 청구

피고와 C 주식회사와 사이의 별지 1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0. 10.자 채권양도양수계약과 별지 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체결된 2018. 11. 30.자 채권양도양수계약은 각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D조합에게 별지 1, 2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위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각 하라.

○ 예비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9. 27.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8년 제974호로 'C'이 2018. 9. 27. 원고로부터 336,000,000원을 차용하되 2018. 10. 10. 20,000,000원, 2018. 10. 25.부터 2021. 4. 25.까지 매월 10,000,000원, 2021. 5. 25. 6,000,000원을 각 변제하기로 하고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라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 받았다.

나. C은 2017년경 피고(2021. 3. 30. F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C은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피고에게 제3채무자, 채권금액이 각 백지인 C의 D조합(이하 'D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라 한다) 및 같은 취지의 채권양도통지서를 각 작성·교부하였다.

1. 피고는 C에게 고로슬래그시멘트를 후불조건으로 공급한다.

2. C이 D조합에 가지고 있는 채권 총액 중 C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고로슬래그시멘트 대금(VAT 포함) 전부를 D조합이 우선적으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C과 피고는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양도 통지서 2부를 피고에게 제공키로 한다.
4. C은 D조합이 고로슬래그시멘트 납품대금 일체를 월말 마감 후 익월 10일 이내에 현금으로 피고의 계좌에 직접 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5. 위와 같은 내용은 2017. 3. 1.자 판매분부터 적용키로 한다.

다. 피고는 2018. 8.경부터 C이 시멘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에 2018. 8. 3.자로 1억 원을, 2018. 9. 4.자로 1억 원을, 2018. 10. 1.자로 1억 원을, 2018. 10. 10.자로 300,000,000원을, 2018. 11. 30.자로 400,000,000원을 각 기재하여 C의 날인을 받았고, C을 대리하여 D조합에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D조합에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내지 6,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은 이른바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데,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은 당사자의 계약내용이 장차 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의 행사로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채권이 다른 채무의 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 또는 다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지에 따라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 또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고, 그 계약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채권양도에서와 마찬가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다40456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이 체결된 다음 예약완결권의 행사에 기하여 채권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 요건의 구비 여부는 양도담보예약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69766 판결 참조). 위와 같은 경우에 수익자가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 부분을 보충하는 등으로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 계약에서 주어진 권리를 행사하는 수익자의 일방적 행위일 뿐이고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채무자의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채권자가 위와 같은 보충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20535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앞서 본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7년경 C과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면서 C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서를 수수한 것은 C의 피고에 대한 시멘트 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C이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장래에 보유하게 될 채권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예약, 즉 집합채권의 양도예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C이 피고에게 그 예약을 일방적으로 완결할 수 있는 예약완결권을 부여하는 한편, 예약완결권 행사의 실효성과 편의를 위하여 C을 대리하여 D조합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수 있는 대리권을 부여한 계약으로 봄이 타당한데, 위 채권양도담보예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로 양도되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의 예약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가 2018. 10. 10. 및 2018. 11. 30.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부분을 보충하는 행위는 이 사건 합의에서 주어진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것으로서 피고의 행위일 뿐이고(C의 날인을 새로 받았다고 하여도 이 사건 합의에서 계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장래 피고가 지정한 부분의 채권양도절차 제공행위일 뿐이다),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C의 채권양도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위와 같은 보충행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한 경우 채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제3자의 행위가 채권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채무자 재산의 감소행위에 관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존재 및 그 채권의 침해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와 적극 공모하였다거나 채권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였다는 등 채권침해의 고의·과실 및 위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야만 할 것이며, 여기서 채권침해의 위법성은 침해되는 채권의 내용, 침해행위의 태양, 침해자의 고의 내지 해의의 유무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거래의 자유 보장의 필요성, 경제·사회정책적 요인을 포함한 공공의 이익,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참조).

나. 판단

원고는 C의 재산이 거의 없었고,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역시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고가 C과 공모하여 2018. 10. 11. 및 2018. 11. 30. C의 D조합에 대한 채권을 양도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와 같은 채권양도양수계약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불가능 내지 곤란하게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즉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인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18. 10. 10. 및 2018. 11. 30. 채권양도계약서와 채권양도통지서의 백지부분을 보충하는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이 485,795,695원 또는 469,111,739원이었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C과 이 사건 합의를 할 당시 또는 2018. 10. 10. 및 2018. 11. 30.경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실현을 곤란하게 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중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지선

판사김덕수

판사황은정

별지